##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3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김예지·주호영·장동혁

송석준 • 이수진 • 최수진

김소희 · 서천호 · 이인선

김선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,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최근 5년간(2019년부터 2023년까지)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%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,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 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##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증서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(「개인정 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)로서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혈액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&lt;신 설&gt;</u> <u>제14조의2(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</u>	현 행	개 정 안
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헌혈증 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기 부렁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정보서 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형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증 서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조 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)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5	<신 설>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정보시 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증 서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

<u>받은 혈액원은 특별한 사유가</u>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 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